

2026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보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관계법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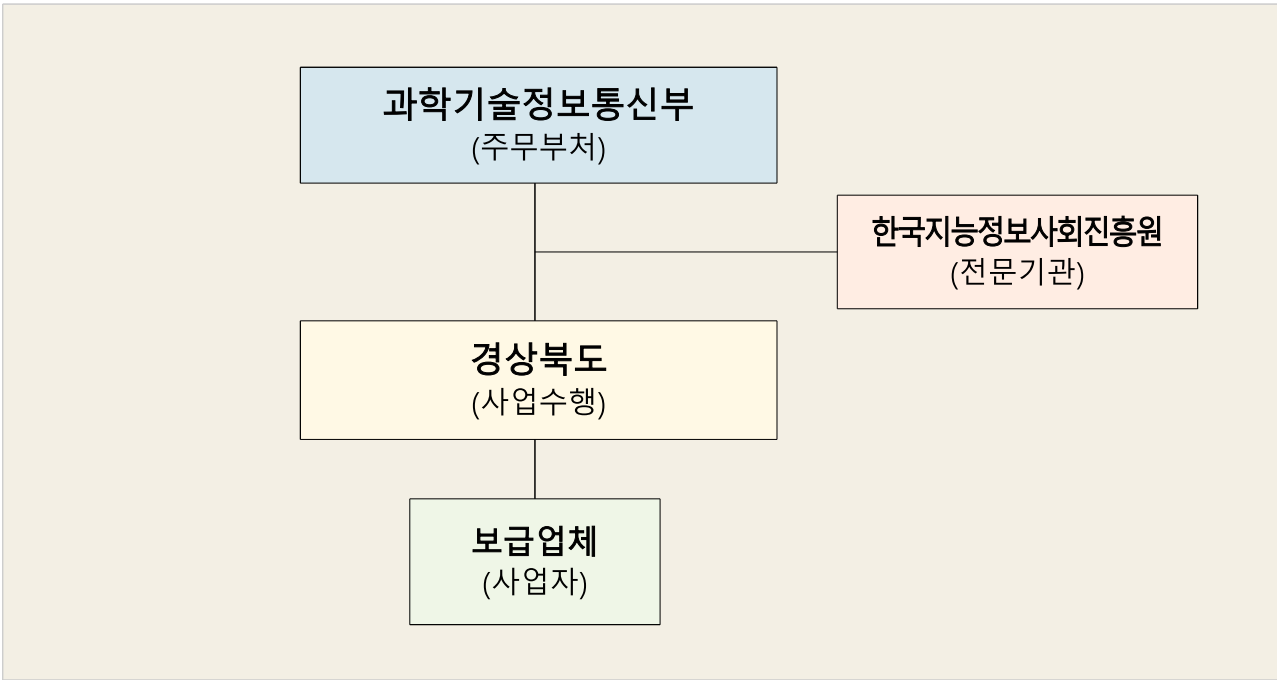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신청·보급절차



□ 추진 체계 및 역할



< 기관별 주요 역할 >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성과 및 점검 ○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지원 ○ 지역별 보급 사업 컨설팅 및 성과 점검 지원 ○ 보급제품 선정 및 보급업체 협약 ○ 보급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경상북도 (수행기관)	○ 예산계획 수립, 과제 기획 등 총괄 관리 ○ 예산·신청 및 집행 관리 ○ 지역 전략계획 수립, 성과관리 ○ 사업수행, 추진상황 점검·보고
보급업체 (사업자)	○ 전문기관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 ○ 보조기기 설치·납품 등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59 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시 참고사항 (상담시 안내)]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제2호 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첨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신청서 서식은 경상북도 누리집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접 수 처 : 아래 참조

지역	연 락 처	지역	연 락 처
포항시청	054-270-2284	청송군청	054-870-6074
경주시청	054-779-6189	영양군청	054-680-6943
김천시청	054-420-6478	영덕군청	054-730-6074
안동시청	054-840-6077	청도군청	054-370-6072
구미시청	054-480-6652	고령군청	054-950-6304
영주시청	054-639-6444	성주군청	054-930-6302
영천시청	054-330-6779	칠곡군청	054-979-6352
상주시청	054-537-7021	예천군청	054-650-6073
문경시청	054-550-6054	봉화군청	054-679-6602
경산시청	053-810-5173	울진군청	054-789-6352
의성군청	054-830-6074	울릉군청	054-790-6301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국번없이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367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요구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지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토록 유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①기타(호출기)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②의사소통보조기기, ③언어훈련S/W, ④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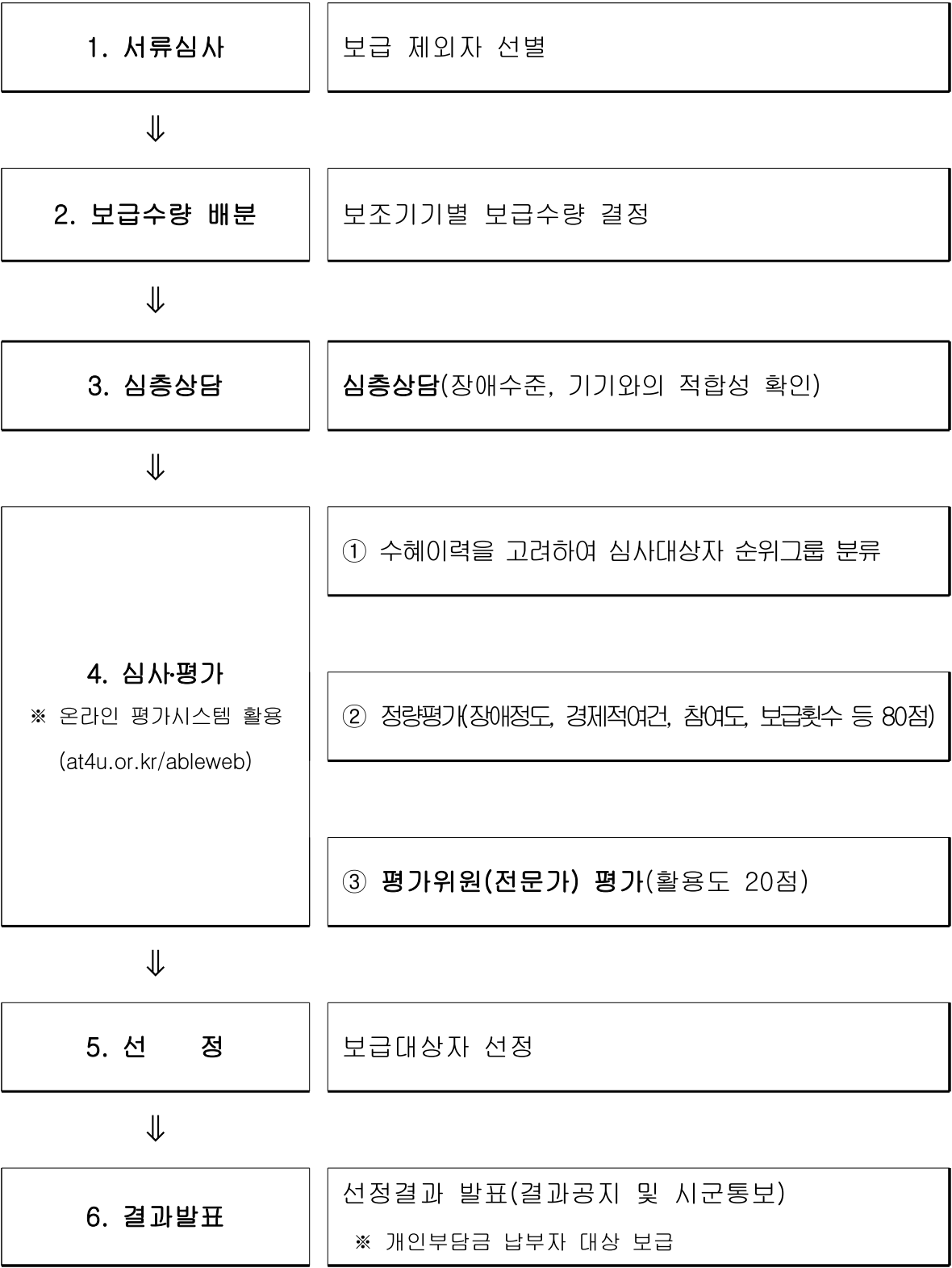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보급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필요 시,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서류평가를 병행하여 보급제외 대상자 신청제한 가능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2026년 보급제품 선정목록 참조)
 - ※ 제품가격 기준 1백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중, 제품 특성 및 신청자의 활용도를 감안 하여 상담 대상 선정
-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점자 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평가 순위분류

-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보급대상 선정 실시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기준>

순위	내구연한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경과	신규자 n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 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기존 수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 수령한 보조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 우선적용 순서 : 보급 제외 > 2 순위 > 1 순위
- 타부처 유사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을 확인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
 - ※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DB 중복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동일품목이라 함은 화면낭독S/W,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 제품 목록의 '품목' 항목 참고
- 선정·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 할 경우,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추가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도 있음

□ 평가(전문가평가)

- 각 유형별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 (외부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구성)
 - ※ 신청수량,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3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
- 평가항목 중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횟수 등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시군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확인(온라인 평가시 신청서를 기준으로 채점)
-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활용성 항목 20점에 대해 평가
- 평가집계 시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 제외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실시
- 심사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 동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장애정도 (20점)	적정장애정도		20
	적정장애정도 외		15
경제적여건 (20점)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7
	일 반		14
참여도 (20점)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20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6
	일 반		14
보급 횟수 (20점) (신규신청, 보급횟수 등)	신규 신청		20
	수혜(보급)횟수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함)	1회	14
		2회	12
		3회	10
		4회	8
활용도 (20점)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사용빈도(횟수) 등)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장애정도'는품목별 적정 사용정도 참조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회의의 결과에 따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 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 품목별 적정 사용정도 (해당 장애 정도 기준) >

구분	분야	장애유형	적정장애정도
시각	화면낭독S/W	시각	중증
	영상확대시스템	시각	중증, 경증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중증
	점자디스플레이	시각	중증
	점자출력기	시각	중증
	데이지플레이어	시각	중증, 경증
	OCR장치	시각	중증, 경증
	화면확대S/W	시각	경증
	특수키보드	시각	중증
	무선신호기	시각	중등, 경증
	터치모니터	시각	중등, 경증
	기타	시각	중등, 경증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지체	중증, 경증
		뇌병변	중증
		지적.자폐성	중증
	특수마우스	지체	중증
		뇌병변	중증, 경증
		지적.자폐성	중증
	터치모니터	지체	중증, 경증
		뇌병변	중증
		지적.자폐성	중증
	무선신호기	지체	중증, 경증
		뇌병변	중증, 경증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청각	중증, 경증
	의사소통보조기기	청각/언어	중증, 경증
		뇌병변	중증, 경증
		지적.자폐성	중증, 경증
	언어훈련S/W	언어	중증
		뇌병변	중증, 경증
		지적.자폐성	중증, 경증
	소리증폭기	청각	중증, 경증
	골도음향기기	청각	중증
	무선신호기	청각	중증, 경증
	기타	청각	중증, 경증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26년 7월 16일(목)

※ 경상북도 누리집 공지 또는 시군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26년 7월 17일(금) ~ 7월 31일(목)

○ 보급업체별 납부계좌 및 연락처

예금주(업체명)	계좌번호	연락처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우체국) 010231-05-000650	070-8630-9678
(주)리보	(우체국) 107599-01-000390	010-2247-5402
(주)엘피케이에스	(우체국) 110-0047-04589	02-3477-3006
모아드림주식회사	(우체국) 100-0003-68653	010-9116-3608
바투비전	(우체국) 010934-02-162004	010-2760-4669
월비	(우체국) 013102-01-009626	010-8258-7807
유)함께걷는발달연구소	(경남은행) 207-0027-0562-09	055-289-6694
유비큐판매(주)	(우체국) 104638-01-002398	010-9590-6003
(주)건웅아이비씨	(우체국) 014530-02-021579	02 563 5260
(주)리드스피커코리아	(우체국) 011973-02-235479	02-3016-8520
(주)샘물정보통신	(우체국) 103713-01-005379	031-753-0293
(주)샤크로	(우체국) 012245-01-015655	070-7410-6594
(주)셀바스헬스케어	(우체국) 013227-01-008127	042-879-3056

예금주(업체명)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프트젠	(우체국) 100-0003-65817	02-6462-0420
주식회사 넥스트지	(국민은행) 578601-01-281203	02-734-1641
주식회사 다함께하는	(우리은행) 1005-804-691838	02-334-3303
주식회사 블루워커	(우체국) 100-0003-63365	010-2514-2732
주식회사 세라핌	(국민은행) 218301-04-097386	010-8200-6077
주식회사 애니케이알	(우체국) 100-0003-64471	053-653-8835
주식회사 엠브이아이	(우체국) 313080-01-001137	042-879-3056
주식회사 여우	(우체국) 703710-01-003186	053-721-7858
주식회사 창 의와놀이	(우체국) 개설중	070-4481-4872
주식회사 하이클론	(우체국) 100-0002-47309	02-702-7567
주식회사 허브티	(하나은행) 661-910013-19104	1660-1676
(주)씨애피	(우체국) 601724-02-036650	02-6010-2209
(주)씨와이디정보기술	(국민은행) 782701-04-136028	070-8880-6681
(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우리은행) 1005-102-769371	070-4575-5991
(주)어니스트비전	(우체국) 103556-01-011371	032-875-2295
(주)에듀엔젤	(국민은행) 807701-00-013941	010-6494-7044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우체국) 013664-01-001695	02-888-1623
(주)오버플로우	(우체국) 101907-01-004594	02-465-3450
(주)투아트	(우체국) 100-0003-69594	035-254-1895
(주)핑크밍키	(우체국) 014530-02-026091	070-4481-4877
(주)헨디인터내셔널	(우체국) 011783-02-248505	02-725-2190
케어라이프코리아(주)	(우체국) 011817-01-013688	02-455-0858
현호ICT	(우체국) 014266-02-119355	010-5381-9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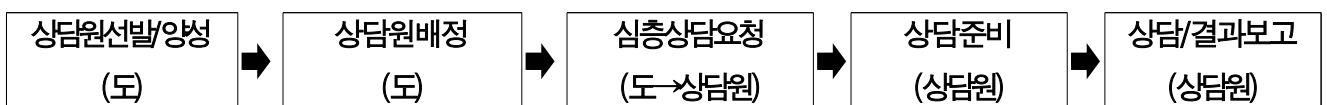
5 심층상담원 운영

□ 상담원 역할

- 일반상담 :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절차, 보조기기의 기능과 용도, 보급이후 A/S처리 지원 등에 대해 전화상담
- 심층상담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기록지 참조)
 - ①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 ② 신청제품 사실 확인 및 사용여건(기기보유여부, 사용경험 등) 확인
 - ③ 신청제품과 지원신청자 장애유형과의 적합성 상담
 - ④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 ⑤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 ⑥ 상담결과 부적합한 경우 타 제품으로 안내
 - ⑦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업무 등
- 심층상담원 배정 및 상담기록지 등록 등 상담관리 업무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
- 심층상담 제품현황 : 2026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 상담원 운영

- 운영기간 : 2026년 5월 25일(월) ~ 7월 15일(수) 23:59 까지
- 심층상담 절차



- 도는 보조기기센터 직원 대상으로 심층상담원을 선발하여 양성교육 실시
 - 양성교육 내용 및 운영요령은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참고
 - 상담원 활용 시 상담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별 서약서 징구 관리
- 상담원 배정은 상담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적절히 고려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 상담원 배정내역 및 현황은 수기로 별도 관리

- 도로부터 심층상담 요청을 받은 심층상담원은 『심층상담 요령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상담 준비
 - 심층상담원은 방문 상담 후 ‘상담기록지(심층상담용)’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도는 심층상담원이 제출한 ‘상담기록지(심층상담용)’를 보급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공(온라인 평가시 열람권한 제공)
 - 심층상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비 차원의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 : 실비 지급 또는 건당 3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 동일장소, 근거리지역(동일한 읍.면.동 소재지)에 2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담할 경우, 활동비 조정

〈정보통신보조기기 일반 및 심층 상담 운영내용〉

구분	일반(전화)상담	심층상담
목적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정보제공	장애유형, 수준, 상태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신청제품에 대한 사실확인, 활용도, 적합성 등 상담, 기타 신청 및 보급절차 등에 대해 안내 등
운영 주체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	운영기관(지자체)
시기	보급사업 전체	신청서 접수 ~ 보급대상자 선정
대상	상담 희망자	1. 15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2.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3. 기타 상담이 필요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보조기기
방법	전 화	직접방문

구분	일반(전화)상담	심층상담
활동 내용	1. 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보급, 취소, 반품, A/S 등) 2. 보조기기 사용 제약조건 확인 안내 3. 보조기기 A/S 1차 상담 4. 보조기기 기능 및 특징 안내 등	1.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2. 신청제품 사실 확인 및 사용여건 (기기보유여부, 사용경험 등) 확인 3. 신청제품과 지원신청자 장애유형과의 적합성 상담 4.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 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5.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6. 상담결과 부적합한 경우 타 제품으로 안내 7.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업무
자료 관리	전화상담 기록	심층상담 기록지
상담원	전화상담원	보조기기센터 직원
상담원 활동비	-	실비 지급 또는 건당 3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상담원 교육참가비는 상담원 활동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구분	심층상담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전 준비사항	- 유선을 통해 심층상담원의 소속, 방문목적 및 취지를 설명 후 방문일정을 협의 - 방문시에 가급적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이 함께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해를 구해 방문일정을 조정 -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방문대상자의 신청사항 및 활용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카탈로그 및 상담에 필요한 상담기록지(서식),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 심층상담원의 소속, 성명 등 신분을 밝히고 상담내용, 소요시간 설명 - 면담자의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통해 본인 확인 (심층상담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른 협조사항은 사업공고시 신청서 작성요령을 통해 고지) - 심층상담기록지의 각 항목에 따라 상담 실시 - 심층상담원 확인사항 및 상담내용 ·장애유형 및 수준 확인 ·PC사양 및 기기보유여부 등 점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신청 보조기기의 주요기능 인지여부 확인 ·신청기기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 및 상담 후 보급 및 행정절차 안내
방문 상담시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 적합성 확인 1) 외부환경요소 ·H/W의 경우 설치 또는 보관공간, 전원(전자제품), 인터넷, 보조도구 필요여부 ·S/W의 경우 PC사양, 보조S/W 필요여부 등 2) 사용적합성(장애유형 및 수준 고려)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전원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혼자, 또는 보호자) ·H/W의 경우 입·출력 및 처리를 위한 버튼, 단추 등의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S/W의 경우 주요 메뉴사용 및 입·출력 및 처리를 위한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제품별 사용적합성 확인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에 따른 체크 ·보조기기 사용시 다른 신체부위가 불편한지(피로감) 여부 등 - 부적합시 보급품목 중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 - 신청자 요청시 신청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단, 고가기기 등 심층대상 제품으로는 변경이 안되며 변경 희망시 신청자로부터 변경신청서류를 작성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부적합시 보급품목 중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 - 신청자 요청시 신청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단, 고가기기 등 심층대상 제품으로는 변경이 안되며 변경 희망시 신청자로부터 변경신청서류를 작성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구분	심층상담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상담시	-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점자평가(가급적 공무원이 평가실시, 공무원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자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평가시간 2배 확대) -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계획(활용성) 확인 등 ·범용활용이 가능한 기기의 경우 보조기기로의 활용계획 확인 -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면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리뷰 -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안내하고 상담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특히,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자제) - 상담 종료 전에 상담관련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자료분실 등)에 각별히 유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심층상담원의 자세 ·면담자의 장애상태 및 여건에 대해 정중하고 충분하게 면담 후 내용 정리 ·단순한 질의응답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형식을 통한 상담 진행 ·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상담기록지 작성 ·장애원인 및 시기에 대해 면담자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문항의 경우 생략 가능 ·상담 중 문제발생시 즉시 지자체로 통보하고, 면담자와는 원만하게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방문 상담후	- 상담기록지의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과작성 및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지자체에 상담결과 자료제출 후, 상담과 관련하여 인쇄, 출력, 복사한 종이문서, 컴퓨터파일 등 개인정보 관련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일체 파기 및 삭제

□ 심층상담 사용적합성 점검 사항

○ 대상 기기별 사용적합성 점검사항(자가진단표 참고)

장애	제품명	점검사항	준비
시각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출력기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 능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점자 평가
	영상확대시스템/ 터치모니터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 또는 기기사용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고려)	
	OCR장치 /화면낭독SW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있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 광학문자판독 등의 목적이 명확합니까?	
지체/ 뇌병변	터치모니터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한쪽 팔을 모니터 높이(예:어깨높이)까지 들어 화면을 신체 일부분 또는 정전식 모니터전용 터치펜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일반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 활용계획이 명확합니까? ※ 일반 마우스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하지장애 등)의 경우 보급대상이 아님 ※ 일반 타이핑 보조도구 사용 불가능 (정전식 전용펜만 사용 가능)	
	특수마우스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입 또는 얼굴 등의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독서보조기	· 상지부위의 장애로 독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 스위치,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중 최소 한 부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청각/ 언어	언어훈련SW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의사소통보조기기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징과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 터치스크린 또는 스위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까? · 보조기기의 주된 사용목적이 의사소통입니까?	
	기타(소리증폭기)	·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일상생활의 TV, PC, 휴대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소리를 깨끗하게 청취하고자 합니까?	

□ 점자평가

○ 대상기기 : 점자출력 패널이 제품에 부착된 ①점자정보단말기, ②점자 디스플레이, ③점자출력기 등

○ 평가시간 : 5분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10분)

○ 평가방법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읽기를 평가하여 정확하게 읽은 결과를 정량점수로(100점) 평가

○ 평가절차

- 점자평가자료(지문)는 10개 유형을 미리 마련하여 평가당일 준비하고 10개 유형 중 피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 점자로 제작 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 등 100자)의 읽기를 평가
- 평점은 평가자료 內 전체 한글 및 숫자의 총 수(공백제외)에서 정확하게 해독한 문자 총 수를 100점으로 환산

※ (예시) 점자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총 수가 100자인 경우 60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60점($60/100 \times 100$)을 득점으로 산정

- 평가 후 목자본에 피평가자의 오탈자(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를 표기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평가결과 고지
- 평가자료는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목자와 병행 또는 함께 제작하여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추가보완

※ 유의사항

- 점자평가 운영을 위한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
- 평가 항목 및 결과, 소요시간 등 관련사항은 평가기록지를 통해 기록.관리하고, 평가결과는 현장에서 피평가자에게 고지
- 점자해독력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의 평가결과를 활용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소지자의 경우, 점자평가 면제
-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평가는 방문상담과 연계 운영하고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원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맹학교 교사 등 활용 가능
- 시청각장애인의 점자평가 편의를 위해 필담을 통한 대화 등 피평가자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

6.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수혜자) 필수 안내 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8월~9월중)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 무상A/S 기간은 보급완료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절대 불가(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홍보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신청자의 보조기기 활용도 확인강화를 위해 보급대상자 선정 시 심층상담결과를 최대한 활용(상담원 교육강화, 상담결과 제공 등)
-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와 협력 등을 통해 장애인 개인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
- 22개시군 홍보방안 (예시)
 - 산하, 소속기관 대상(장애인 이용시설 중심) 사업안내
 - 지역 내 특수학교(학급),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등 대상 사업안내
 - 지자체 소식지, 주민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업안내
 - 해당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체[하지장애인 제외], 뇌병변 유형) 대상 개별우편, SMS, 또는 전화 안내 및 장애인단체를 통한 안내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사례발표회 등 행사 개최
 -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광고, 전시회 참가 등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의 경우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 추진 요망

8. 중복보급 방지 대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급품목* 중복에 따라 보급대상자 선정 시 동 교부사업 및 유사사업으로부터 수혜이력이 있는 자에게 동일 분야의 제품이 중복 보급되지 않도록 유의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비디오(영상확대시스템), 문자판독기(OCR장치), 특수키보드(시각), 대화용장치 등 6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시행주체 : 시·군·구 지자체(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청각, 시각장애는 정도 무관, 뇌병변 심장장애는 품목별 정도확인)
- 지원내용 : 28종 교부품목 내에서 지원한도액 이내
- 안내문의 : 1670-5529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중복보급 방지 대상품목 현황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보급)
시각장애인	영상확대시스템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확대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DAISY플레이어 및 전자 책리더	DAISY플레이어 및 전 자책리더
	OCR장치	OCR장치 및 OCR S/W (구. 광학문자판독기)	문서인식 HW 스크린리더
	화면낭독SW	-	음성출력SW
	화면확대SW	-	화면확대SW
	특수키보드	특수키보드 (구. 녹음및재생장치)	키보드
청각장애인	무선신호기	시각신호 표시기	신호장치
	소리증폭기	헤드폰 (청취증폭기)	소리증폭장치
	영상전화기	-	화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대 화용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언어훈련 SW	-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	입력보조장치(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	독서보조기
계	16개 품목	7개 품목	16개 품목

※ 중복보급 방지 요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을 통해 중복수혜 대상자 확인
및 중복대상자 발생시 부적격 조치

9.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접수 : 5. 7.(목) ~ 6. 23.(화) 23:59까지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및 평가) : 5.25.(월) ~ 7.15.(수)
 - ※ 심층상담 대상제품 목록 참고
- 결과발표 : 7. 16.(목) (도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7.17.(금) ~ 7. 31.(목)
 - ※ 필요에 따라 추가보급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9월 말까지 보급 완료
- 보급 및 내역확인, 검수 : 8월 초 ~ 9월 말
 - ※ 정부 예산조기집행 계획 등에 따라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검수 등 추진
- 전년도(2025년) 보급사업 이용실태조사 : 10월 ~ 11월